

주주 각위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공고

주주님들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의 시행(2019. 09. 16.)에 따라 전환대상 주권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증권법 부칙 제 3 항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는 2019 년 8 월 22 일부터 당사의 4 회차 5 회차 6 회차 전환사채의 실물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2019 년 08 월 22 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본 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가 없으신 경우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에 실물주권을 입고시키거나 2019 년 08 월 22 일 오전 11 시까지 당사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증권 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요청하셔야 합니다.
3. 당사에서는 법 시행일 전적 영업일(2019 년 08 월 22 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증권법 제 25 조 제 1 항에 따라 주식이 전자등록되도록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9 년 08 월 21 일

제이스테판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문동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